#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39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 박찬대·조응천·김수흥

정일영 · 이성만 · 허종식

윤관석 · 송영길 · 김상희

윤영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때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음.

이는 내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나,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 후 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350건인데 비해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지적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를 받아 야 하는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 위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 되기가 어렵기 때문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는 협의체)는 2018년 공익법인, 학교법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제안함.

최근 상장법인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도 외부회계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주기적 지정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장법인의 경우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주기적 지정제도 등의 회계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시장참여자의 긍정적 평가가 높아져 2020년 스위스 IMD의 회계·감사에 대한 평가가 전년 대비 15단계 상승하였음.

이에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감사증명서는 외부감사보고서로 용어를 수정하고, 감사인 자격에 관하여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으로 수정함(안 제31조 및 제31조의2).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후단 중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부감사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 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 2.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 ⑤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제4항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공 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한국공

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2제1항 중 "감사증명서"를 "외부감사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에 위탁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 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第31條(豫算 및 決算의 제출) ① 第31條(豫算 및 決算의 제출)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학 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 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 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 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 외부감사보고서-----다.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 <신 설> 학교육기관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 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 <신 설> 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 <신 설>

<신 설>

⑤ (생 략)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u>감사증명서</u>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 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

하.	는	외그	부감시	-인(연	<u> 1속</u>	하는	2
개	회	계연	년 도 는	동일	한	외부	감
사	인 (	으로	지정	한다)			

- ⑤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 하는 학교법인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제4항제2호 에 따른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 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u>⑦</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u>외부감사보고서</u>	
②	

체에 위탁할 수 있다. <u><후단</u> 신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